

의안번호	제333호
의결연월일	2021. 5. 10.

-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5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5. 10.

제26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문화관광과장 : 박 상 목)

### 가. 제안이유

- 군립합창단 단위 재위촉 절차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성비 기준 명확화(안 제4조)
  -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

○ 단원의 재위촉 절차 개선(안 제7조)

- 재위촉 절차 개선으로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

(기존)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 →

**[변경]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**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### 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○ 본 조례안은 예산군립합창단 단원 재위촉 절차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없 음

### 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○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